

논산시 공고 제2022-1525호

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8월 31일

논 산 시 장 

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○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
(안 제4조의2)

3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8. 31 ~ 2022. 9. 20(2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논산시장(참조 뉴딜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가.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·주소·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 사항 등

나. 제출처 : 논산시청 뉴딜경제과 기업지원팀

- 주 소 : (우)32987 /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(내동)

- 전 화 : 041)746-6042 / 팩스 : 041)746-6019

다. 제출방법 및 문의처

○ 서면, 전화,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뉴딜경제과 기업지원팀(전화041-746-604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: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본문 중 “2022년” 을 “2027년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뉴딜경제과장	유 재 락
	기업지원팀장	홍 세 기
	담당자	전 종 훈 (746-604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</u> 12월 31까지로 한다. 다만,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<u>2027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◎ 조례안 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2. 비용추계결과

- ◎ 제17조 결산 및 보고를 위해 읍자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회 수당 발생으로 추계
- 100,000원 × 3명 = 300,000원/년간
 - 300,000원/년간 × 5년 = 1,500,000원

3. 작성자

뉴딜경제과장 유재락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	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	입	300	300	300	300	300	1,500
지	방 세	300	300	300	300	300	1,500
세	출	300	300	300	300	300	1,500
201-01사무관리비 위 원 회 수 당		300	300	300	300	300	1,500
재 원 조 달		300	300	300	300	300	1,5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(시비)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300	300	300	300	300	1,500
	지방세	300	300	300	300	300	1,5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참고 2

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

구 분	성 명	소 속	직 위	비 고
계	9명			
위원장	안 호	논 산 시	부 시 장	
부위원장	김 진 수	논 산 시	행 복 도 시 국 장	
위 원	김 남 충	논 산 시 의 회	산 업 건 설 위 원 장	
	엄 태 성	하나은행	논 산 지 점 장	
	이 명 렬	NH농협은행	논 산 시 지 부 장	
	김 중 윤	논산시기업인협의회	기 업 인 협 의 회 장	
	주 창 덕	논 산 시	참 여 예 산 실 장	
	임 성 영	논 산 시	세 무 과 장	
	유 재 락	논 산 시	뉴 딜 경 제 과 장	
간 사	홍 세 기	논 산 시	기 업 지 원 팀 장	